

울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영문 병기 발급' 안내

□ 근거규정

-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3조(등록 및 신고사항의 변경)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영문 병기 발급 운영 검토보고」 항만물류과-3599호('26.06.19.)

□ 제출서류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공통서류】 - 주소 변경, 대표자 변경, 업체명 변경 등

1. 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1부

- 회사 자체 공문 또는 붙임 양식을 활용
 - 법정양식은 없으므로 편하신 방식으로 제출하시되, 변경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요청(등록증 영문버전 발급 요청 등)

2. 기존 등록증(신고확인증) 원본 반납

3. 법인등기부등본 영문번역본 1부(법인인 경우)

4. 사업자등록증(국세청 발급) 영문 1부

※ 3,4번은 등록증 영문 표기를 확인하기 위함.

문의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 052-228-5611 / youandme0618@korea.kr

※ 본 안내서는 민원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자료로 등록(신고)업무는 등록 당시 현행 규정에 따릅니다.

[별지 제2호서식]의 근거 [영문 등록증(안)]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Certificate of Harbor Transport Business Registration

상호(명칭)

Name of Business

대표자(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Name)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Date of Birth (Business 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사업의 종류

Business Type

등록 연월일 Date of Registration

0000년(Year) 00월(Month) 00일(Day)

항만명(사업구역)

Harbor (Business Area)

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 이용 항만시설

Scope of Users, Types of Cargo Handled, or Harbor Facility Used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entity has been duly registered as a Harbor Transport Business Opera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5(2) of the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and Article 6 of the Enforcement Rule thereof.

20 년(Year) 00월(Month) 00일(Day)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인)

Head of Ul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Stamp)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사항 변경요청서

요청인	상호명	등록 항만명 울산항
	등록(신고)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번호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FAX :)
	주소	

등록(신고)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영문 병기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발급 요청
-------	------------------------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신고)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 기존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신고확인증) 원본 1부.(반납)	수수료 없 음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각 1부.(항만용역업 중 통선업에 한함)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5. 3. 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48호, 2025. 3. 28., 일부개정]

제13조(등록 및 신고사항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이 맞으면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및 확인증의 발급은 항만운송사업등 관련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